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 | |
|------------|------|
| 의 안 번 호 | 2602 |
|------------|------|

2021. 9. 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I. 제안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8월 11일 김종무 의원 발의
- 나.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21.9.7. 상정·의결)

II. 제안설명 요지(김종무 의원)

1. 제안이유

- 선진 옥외광고문화의 정착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옥외광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옥외광고물법」에 규정된 사업자단체와 협력하여 옥외광고대상전, 광고문화 개선사업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옥외광고대상전 등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행사 및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Ⅲ. 검토보고 요지(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이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 사업자단체가 수행하는 행사 또는 사업에 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사)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의 대한민국옥외광고대상 서울시 예비심사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파악됨.

| 현행 | 개정안 |
|--|--|
| <p>제30조(우수광고물 발굴 및 시상 등)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우수광고물의 발굴·확산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좋은간판 공모전을 실시하여, 좋은간판으로 선정된 점포주·광고주·제작자·광고사업자 또는 디자이너 등에 대해서는 영업 등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신설></p> | <p>제30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5조의 2에 따라 옥외광고 사업자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각종 행사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u> 2. <u>옥외광고대상전 개최</u> 3. <u>광고문화 개선사업 등</u> |

- 대한민국옥외광고대상(이하, 옥외광고대상)은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이하, 중앙회)에서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등의 후원을 받아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서 시설치광고물과 창작광고물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중앙회 본심사 전에 시·도 옥외광고협회의 예비심사가 수행되고 있음¹⁾.
- 좀 더 살펴보면, 중앙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²⁾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광역자치단체에 옥외광고협회(이하, 협회)를 두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지부를 두고 있는 가운데³⁾,

1) 시·도 협회에서 지방예심을 거친 수상작품은 동상까지만 본심에 접수 가능하고, 지방예심이 없는 시·도 협회의 경우 본심에 바로 접수 가능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① 옥외광고사업자는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시·도지사와 시장등이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

⑤ 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중앙회 정관

제2조 【명칭】 ① 본 협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한국 옥외광고협회 중앙회(이하 '협회' 또는 '중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 ② 협회는 특별시, 각 광역시 및 각 도에 민법 제31조 또는 제42조, 제49조 내지 제97조에 의거, (사)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사)부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 (사)대구광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상당수의 시·도 협회에서 옥외 광고대상 예비심사를 수행하고 있고, 옥외광고물법⁴⁾ 및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시·도 협회 예비심사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음(검토보고서 붙임1).

-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다른 지자체와 같이 서울시에서도 옥외광고대상 예비심사가 개최되도록 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서울시 예산 3천만 원과 협회 예산 2천만 원으로 서울특별시옥외광고대상전을 개최할 계획임(동상 이상의 수상작은 본심사에 제출).
- 그 동안 옥외광고대상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없었던 것은, 다른 시·도와 달리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옥외광고물 시장을 해 왔기 때문으로(서울좋은간판 공모전, '21년 소요예산 5천 9백만 원)⁵⁾,

역시옥외광고협회, (사)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 (사)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 (사)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 (사)울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 (사)경기도옥외광고협회,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 (사)충청북도옥외광고협회, (사)충청남도옥외광고협회, (사)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 (사)전라남도옥외광고협회, (사)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사)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사)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사)세종특별자치시옥외광고협회를 시·도에 두며, 각 시·군·구에 지부를 둔다.

※ 중앙회와 시·도 협회는 행정안전부 및 해당 지자체 허가를 받아 각각 사단법인으로 등록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7. 우수 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해당 세부사업 :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21년 예산 1억 3백만 원 중 5천 9백만 원이

이 개정조례안은 유사 사업의 예산 중복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여짐.

※ 공모전 비교 (자료: 도시빛정책과)

| 구 분 | 서울좋은간판 공모전 | 옥외광고대상 | 비고 |
|------|--|--|---|
| 주 최 | 서울특별시 |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 |
| 주 관 | 서울특별시 |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 |
| 후 원 | | 행정안전부 등 | |
| 개최주기 | 매년 | 매년 | |
| 분 야 | - 좋은간판(기설치 광고물) - 창작간판 - 간판개선지역 | - 기설치 광고물 - 창작광고물(시안/모형) | 서울시협회 참가 계획 -창작광고물 · 모형(성인) · 그림(초등학생) |
| 시 상 | - 총 19작품(시상금 1,450만원) - 훈격 : 서울특별시장 | - 총 50작품(시상금 1,970만원) - 훈격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안부장관상, 회장상 | |

- 그러나, 서울시의 옥외광고물 시장 규모와 도시경관에서 옥외광고물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서울시 자체 공모전 개최와 더불어, 옥외광고대상 지원을 통해 전국적 위상인 옥외광고대상 출품 및 수상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⁶⁾, 이는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광고인들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옥외광고물법에서 옥외광고 사업자단체를 규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관파트너십을 통해 옥외광고물등의 효율적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로서,

서울좋은간판 공모전 예산임)

6) 옥외광고대상에 매년 100 건 이상이 출품되고 있으나, 최근 3년 서울시(협회, 개인) 출품은 전무함(전체 출품수: '20. 114건, '19년 125건, '18년 115건, 자료: 도시빛정책과)

서울시에서 협회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옥외광고물등의 경관성·공공성 증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의 지도감독에 민간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우수광고물 발굴 및 시상 등)”을“(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5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 사업자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각종 행사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 옥외광고대상전 개최
 3. 광고문화 개선사업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0조(우수광고물 발굴 및 시상 등) ①·② (생략)</p> <p><신 설></p> | <p>제30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5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 사업자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각종 행사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u> 2. <u>옥외광고대상전 개최</u> 3. <u>광고문화 개선사업 등</u>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무 의원 발의)

| | |
|----------|------|
| 의안 번호 | 2602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11일

발 의 자 : 김종무 의원(1명)

찬 성 자 : 김기대, 김기덕, 김정환,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송아량, 양민규,
이성배, 이영실, 장상기,
전석기, 홍성룡, 황규복
의원(18명)

1. 제안이유

- 선진 옥외광고문화의 정착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옥외광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옥외광고물법」에 규정된 사업자단체와 협력하여 옥외광고대상전, 광고문화 개선사업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옥외광고대상전 등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행사 및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우수광고물 발굴 및 시상 등)”을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으로 한다.

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 5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 사업자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각종 행사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 옥외광고대상전 개최
3. 광고문화 개선사업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0조(우수광고물 발굴 및 시상 등) ①·② (생략)</p> <p><u><신설></u></p> | <p>제30조(<u>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u>)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5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각종 행사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u>1. 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u></p> <p><u>2. 옥외광고대상전 개최</u></p> <p><u>3. 광고문화 개선사업 등</u></p> |

문서번호

2021073000000014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김종무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박주용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7.30

회신일 : 2021.08.10

내용문의 : 02-2180-7954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조제3항 신설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1) 추계결과 = 150,000천원(연평균 30,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0,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2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2~2026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2)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150,000천원(연평균 30,000천원)
 - 총비용 = 옥외광고대상전 개최

(단위 : 천원)

| 구분 | | 연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계 |
|-------------|-------------------------|----|--------|--------|--------|--------|--------|---------|
| | | | | | | | | |
| 세입 | - |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 세출 | 옥외광고대상전 개최 (제30조제3항) |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150,000 |
| | 소계(b) |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150,000 |
| □ 총 비용(b-a) | |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150,000 |

- 옥외광고대상전 개최 = 150,000천원
 - = 연간 개최지원 비용 × 5년
 - = 30,000천원 × 5년

※ 연간 개최지원 비용 : (사)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의 「제1회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대상전」 2022 공모전 사업계획서(안)(2021.07)의 개최 소요비용 50,000천원 중 서울시 지원금액 30,000천원 적용(20,000천원은 협회 부담)

[참고자료] (사)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옥외광고대상전」
2022 공모전 사업계획서(안)(2021.07)'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예 산 분 석 관 박주용

☎ 02-2180-7954

e-mail : pjooyong@seoul.go.kr